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방송통신위원회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고, 법제처의 일몰기한 정비 협조 요청('21.12.30.) 등에 따라 규제 재검토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 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를 개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조항(제11조)을 규제의 재검토(안 제11조) 및 재검토기한(안 제12조)로 분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000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11호, 2021.10.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u>행정규제기본법</u>」 제8조 및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1조(규제의 재검토) ----- ----- 「<u>행정규제기본법</u>」 제8조 ----- ----- ----- ----- ----- ----- ----- ----- ----- -----.</p> <p>제12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u>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별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1326%
(주)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주)에스비에스엠앤씨)	9.1327%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22년 결합판매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부산문화방송(주)	0.6170%
		대구문화방송(주)	0.4570%
		광주문화방송(주)	0.3763%
		대전문화방송(주)	0.4132%
		전주문화방송(주)	0.3788%
		(주)엠비씨경남	0.6390%
		제주문화방송(주)	0.4501%
		울산문화방송(주)	0.3721%
		춘천문화방송(주)	0.4012%
		(주)엠비씨강원영동	0.7299%
		포항문화방송(주)	0.3269%
		여수문화방송(주)	0.3002%
		(주)엠비씨충북	0.8148%
		원주문화방송(주)	0.3360%
		안동문화방송(주)	0.3081%
목포문화방송(주)	0.2964%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재)CBS	1.7377%
		(재)불교방송	0.5001%
		(재)가톨릭평화방송	0.4306%
		(재)극동방송	0.2062%
		(재)원음방송	0.2339%
		(재)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	0.0535%
		(재)부산영어방송재단	0.0067%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6%
		한국교육방송공사	1.4054%
		(주)경인방송	0.1648%
		(주)YTN라디오	0.1641%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22년 결합판매 지원규모(%)
(주)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케이엔엔 (주)티비씨 (주)광주방송 (주)대전방송 (주)전주방송 (주)울산방송 (주)청주방송 (주)지원방송 (주)제주방송	1.1469% 0.8937% 0.7472% 0.6238% 0.4147% 0.4165% 0.4286% 0.5654% 0.4066%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3.4893%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1272